

<2022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01.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성립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본다.
- ② 지방의 사무를 주민에 의해 처리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를 강조한다.
- ③ 지방자치를 헌법으로 보장함으로써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본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천부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자연법적인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본다.

<해설>

- ①, ④ (X) 고유권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② (X) 정치적 의미의 자치는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③ (O) 제도적 보장설은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법에 지방자치 규정을 둬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는 입장입니다.

답: ③

02. 지방자치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② 지방 토호 세력이 지역의 이익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 ③ 행정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④ 새로운 제도나 정책에 대한 지역적 실험을 어렵게 한다.

<해설>

- ①, ②, ③ (O) 지역이기주의 발생, 지방 토호 세력의 이익 독점,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은 지방차이의 한계입니다.
- ④ (X)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점은 지방자치의 효용입니다.

답: ④

0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상 주민조례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학생인권에 대한 사항
- ② 방사능 안전급식에 대한 사항
- ③ 원자력발전소 설치 반대에 대한 사항
- ④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사항

<해설>

- ③ (O) 공공시설의 설치 반대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답: ③

04.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②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③ 주민의 의무 및 주민소환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4조
- ② (O) 「지방자치법」 제41조
- ③ (X) 주민의 의무와 주민소환제도는 2022년 1월 개정전 「지방자치법」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 ④ (O)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답: ③

05. 스톤(C. Stone)의 레짐이론(Regim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Atlanta)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방정치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 ㄴ. 레짐은 의도적인 노력보다는 모든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참여자들이 가치와 신념체계까지 공유한다.
- ㄷ. 환경문제와 지역 내 삶의 질에 큰 관심을 두는 레짐의 유형은 중산층 진보레짐(middle class progressive regime)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풀이의 핵심>

○ 레짐의 유형(Stone)

구분	추구가치
현상유지 레짐	친밀성 높은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나타남 → 기존의 사회경제적 관행 유지(현상 유지 추구)
개발 레짐	지역성장을 추구하는 레짐 → 재개발, 공공시설 확충을 추구
중산계층 진보 레짐	중산계층의 주도로 삶의 질 개선, 생활환경보호 등을 추구
하층기회 확장 레짐	저소득층의 기본적 경제욕구 충족과 이익 확대를 지향하는 레짐 → 저소득층 보호, 직업교육 등을 추구

<해설>

- ㄱ. (O) 미국의 정치학자 스톤이 애틀랜타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연구로 시작된 이론입니다. 지역사회문제를 자체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지방정부가 기업 등 민간부문의 주요 주체들과 일종의 연합을 형성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지방정치의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이론).
- ㄴ. (X) 레짐 참여자들이 가치와 신념체계까지 공유하는 것이 아니나 큰 틀에서의 합의가 존재하고 레짐의 역사가 오래 될수록 정책적 방향이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레짐은 의도적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지역사회와 도시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 ㄷ. (O) 중산층 진보레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 ②

0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경계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 조례로 정한다.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 ② (X) 관할 구역의 경계를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③ (X)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변경은 조례 제정 후,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 ④ (X)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X).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답: ①

0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가 포함된다.
- ②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③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
- ④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
- ② (O) 「지방자치법」 제12조 제3항
- ③ (O) 「지방자치법」 제15조
- ④ (X)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도가 아닌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답: ④

08. 「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단체 또는 긴급재정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황을 3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 ① (O) 「지방재정법」 제60조의5 제1항
- ②, ③ (X)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 ④ (X) 30일이 아닌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의5(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 1. 재정위기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 2. 재정주의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제60조의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2.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 3.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황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답: ①

09. 「지방자치법」상 보조기관과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교육훈련기관과 시험연구기관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부시장과 부지사의 수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보조기관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126조
- ② (O) 「지방자치법」 제123조
- ③ (O) 「지방자치법」 제128조
- ④ (X) 합의제행정기관은 소속 행정기관입니다(보조기관 X).

「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답: ④

1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라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④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 ② (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③ (O)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 ④ (O)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답: ②

11.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광역시와 도가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 중 공통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취득세	ㄴ. 재산세	ㄷ. 지방소비세
ㄹ. 지방소득세	ㅁ. 주민세	ㅂ. 지방교육세

-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ㅂ
- ③ ㄴ, ㄷ, ㅁ
 ④ ㄹ, ㅁ, ㅂ

<풀이의 핵심>

○ 지방세 종류 암기방법: 목적세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 특별시·광역시세임을 암기 → 도세는 4개(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암기 → 자치구세로 2개(등록면허세, 재산세) 암기

<해설>

도세: 취득소비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지지(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시·광역시세: 등재(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 취득소비세 중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취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와 목적세(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입니다.

ㄱ. 취득세, ㄷ. 지방소비세, ㅂ. 지방교육세가 특별시·광역시와 도가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 중 공통입니다.

답: ②

12. 지방분권추진기구를 설치 시기가 이른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다. 자치분권위원회
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① 가→나→다→라→마
- ② 가→라→나→마→다
- ③ 나→라→가→마→다
- ④ 나→라→마→가→다

<풀이의 핵심>

○ 지방분권 관련 추진기구

정부	추진기구(대통령 소속)
김대중 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노무현 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박근혜 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위원회

<해설>

지방분권추진기구를 설치 시기가 이른 것부터 나열하면, 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 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다. 자치분권위원회

답: ③

13.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사항은 주민의 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 ④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해설>

- ① (X)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② (O) 「지방자치법」 제20조 제2항
- ③ (O)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 ④ (O)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답: ①

14.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이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ㄴ.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 ㄷ. 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ㄹ.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 ㄱ. (X) 재적의원 4분의 1이 아닌 3분의 1입니다.
- ㄴ. (X) 상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합니다.
- ㄷ. (O)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 ㄹ. (O) 「지방자치법」 제29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답: ④

15. 중앙지방협력회의법령상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가 협력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 ②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중앙지방협력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이고 부의장은 시·도지사 협의회의 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④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 ① (X)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X)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은 심의대상입니다.
- ③ (X) 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 ④ (O)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② 협력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된다.

③ 협력회의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이하 “시·도지사협의회의장”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된다.

제4조(심의 결과의 활용)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답: ④

16. 「지방자치법」상 분쟁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②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의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제외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167조
- ② (O)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2항
- ③ (X)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제외한 X)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④ (O)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답: ③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조례 및 의결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③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는 기금의 설치·운용이 포함된다.
- ④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30조
- ② (O) 「지방자치법」 제28조
- ③ (O) 「지방자치법」 제47조
- ④ (X)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5. 기금의 설치·운용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답: ④

18. 「지방재정법」상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 발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②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승인의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해 발행할 수 있다.
- ④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이 아니더라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해설>

- ① (X)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② (X)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③ (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X).
- ④ (O) 「지방재정법」 제11조의2

「지방자치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 ④

19.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고시하여 설립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176조
- ② (X) 행정협의회는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합니다(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X).
- ③ (O) 「지방자치법」 제168조 제2항
- ④ (O) 「지방자치법」 제199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68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69조(행정협의회 구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구성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답: ②

2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조정위원회를 둔다.

<해설>

- ① (O) 「지방자치법」 제184조 제1항
- ② (X)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 ③ (O) 「지방자치법」 제190조 제1항
- ④ (O) 「지방자치법」 제18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5조(국가사무나 시·도 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조정위원회를 둔다.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답: ②